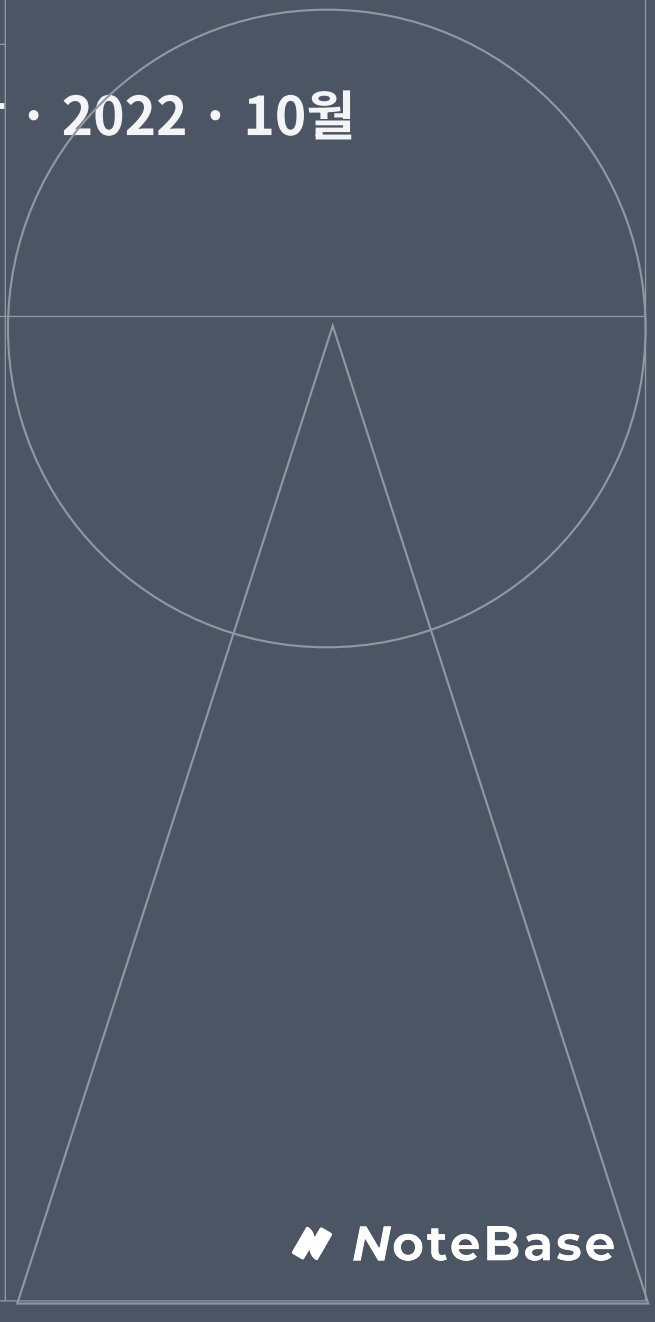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22 · 10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22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22 · 10월

문 1. 래스터자료 구조와 비교하여 벡터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러 레이어를 중첩하여 시뮬레이션이 용이하다.

② 데이터가 압축되어 간결한 형태이다.

③ 위상관계 정보를 요구하는 분석에 효과적이다.

④ 위치와 속성에 대한 검색, 갱신, 일반화가 가능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래스터자료 구조와 벡터자료 구조의 장단점과 적용 분석 유형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래스터자료 구조는 공간을 일정한 셀로 나누어 값을 저장하는 방식이어서 중첩과 시뮬레이션에 유리하다. 벡터자료 구조는 점·선·면의 좌표와 속성을 객체 단위로 저장하는 방식이어서 데이터가 간결하고 위상관계 분석, 검색, 갱신, 일반화에 유리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여러 레이어를 중첩하여 시뮬레이션이 용이하다"는 표현이다. 여러 레이어의 중첩과 셀 단위 시뮬레이션에 특히 유리한 것은 벡터가 아니라 래스터자료 구조이다.
② O: 벡터자료 구조는 좌표와 속성을 객체 단위로 저장하므로 불필요한 공간 점유가 적어 데이터가 비교적 압축된 간결한 형태가 된다.
③ O: 벡터자료 구조는 점·선·면 사이의 인접, 연결, 포함 같은 위상관계를 표현하기 쉬워 위상관계 정보를 요구하는 분석에 효과적이다.
④ O: 벡터자료 구조는 객체별 위치와 속성을 함께 관리하므로 검색, 갱신, 일반화가 가능하다.

오답 포인트

래스터와 벡터의 장점을 서로 바꾸어 놓으면 헷갈리기 쉽다. ①은 벡터의 장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래스터의 대표 장점인 중첩 분석과 시뮬레이션 용이성을 끌어온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첩·시뮬레이션이 보이면 래스터를 먼저 떠올리고, 위상관계·객체관리·검색·갱신이 보이면 벡터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래스터는 셀 중첩, 벡터는 객체 위상이다.

NoteBase

문 2.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적법」 개정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토지분할 · 합병 ·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① 제6차 개정(1991. 12. 14.)
② 제7차 개정(1995. 1. 5.)
③ 제8차 개정(1997. 12. 13.)
④ 제9차 개정(1999. 1. 18.)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지적법 개정 연혁 중 토지이동 신청기간 연장 시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의 신청기간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바뀐 개정 시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토지이동 =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다.

핵심 구분

종전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했고, 1999. 1. 18. 개정에서 이를 60일 이내로 연장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1999. 1. 18. 개정에 해당하고, 그 이전 개정들은 이 기간 연장 개정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991. 12. 14. 개정은 보기의 토지이동 신청기간 연장 개정이 아니다.
틀린 표현: 제6차 개정(1991. 12. 14.)
올바른 표현: 제9차 개정(1999. 1. 18.)이다.

② X
1995. 1. 5. 개정도 보기의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의 연장 개정이 아니다.
틀린 표현: 제7차 개정(1995. 1. 5.)
올바른 표현: 제9차 개정(1999. 1. 18.)이다.

③ X
1997. 12. 13. 개정 역시 보기의 신청기간 연장 개정이 아니다.
틀린 표현: 제8차 개정(1997. 12. 13.)
올바른 표현: 제9차 개정(1999. 1. 18.)이다.

④ O
1999. 1. 18. 개정에서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였다.
보기의 설명과 개정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개정 차수와 날짜만 따로 외우면 서로 뒤섞이기 쉽다. 이 문제는 개정 연혁 자체보다 '토지이동 신청기간 30일→60일 연장'이라는 내용 키워드를 특정 시점과 연결했는지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적법 개정 연혁 문제는 먼저 개정 내용의 숫자 변화나 핵심 문구를 잡은 뒤 그 변화가 처음 반영된 시점을 연결해서 판단한다. 이 문제에서는 '30일에서 60일로 연장'이 바로 식별 기준이다.

암기 포인트

토지이동 신청기간 연장 = 1999. 1. 18. 개정 =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이다.

NoteBase

문 3. 고려시대 토지제도 중 전쟁에 참가하여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게 지급되었던 토지는?

① 구분전
② 투화전
③ 공음전
④ 공해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고려시대 각종 토지제도의 지급 대상과 용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분전은 전쟁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이나 생계가 어려운 양반·군인 가족을 구휼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이다.
투화전은 고려에 귀화한 외국인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공음전은 공신이나 5품 이상 고위 관료 가문에 세습이 허용된 토지이다.
공해전은 중앙과 지방 관청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둔 토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구분전은 전쟁에 참가하여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게 지급한 토지이므로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투화전'이다. 투화전은 귀화한 외국인에게 지급한 토지이고, 전사 군인 유가족에게 지급된 토지는 구분전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공음전'이다. 공음전은 공신과 고위 관료 가문에 세습적으로 주어진 토지이고, 전사 군인 가족에 대한 구휼성 토지는 구분전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공해전'이다. 공해전은 관청의 운영 경비를 마련하는 토지이고, 전쟁 사망 군인의 가족에게 지급한 토지는 구분전이다.

오답 포인트

토지 이름에 '공'자가 들어가는 공음전과 공해전을 함께 외우면 지급 대상을 뒤바꾸기 쉽다. 이 문항은 유가족 구휼이라는 지급 목적을 떠올리면 바로 구분전으로 좁혀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토지제도 문제는 먼저 누구에게 주는 토지인지부터 본다. 유가족 구휼이면 구분전, 귀화인이면 투화전, 공신·고관 세습이면 공음전, 관청 경비면 공해전으로 판단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구분전은 군인 유가족, 투화전은 귀화인, 공음전은 공신·고관, 공해전은 관청 경비이다.

NoteBase

문 4. 우리나라 지번부여 방법 중 설정단위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단지(團地)단위 지번부여 방법
② 도엽(圖葉)단위 지번부여 방법
③ 지역(地域)단위 지번부여 방법
④ 지번(枝番)단위 지번부여 방법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번부여 방법을 설정단위에 따라 지역단위·도엽단위·단지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지역단위 지번부여 방법은 행정구역이나 일정 지역 전체를 하나의 번호 부여 단위로 삼는 방식이다. 도엽단위 지번부여 방법은 지적도 한 장 한 장의 도엽을 기준으로 지번을 붙이는 방식이다. 단지단위 지번부여 방법은 하나의 단지나 블록을 기준으로 그 내부 필지에 지번을 붙이는 방식이다. 설정단위에 따른 분류는 무엇을 번호 부여의 기준 공간으로 삼는지가 판단축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단지단위 지번부여 방법은 단지 자체를 번호 설정의 기준 단위로 삼으므로 설정단위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
2번 O: 도엽단위 지번부여 방법은 도면 한 장인 도엽을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므로 설정단위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
3번 O: 지역단위 지번부여 방법은 일정 지역 전체를 하나의 번호 부여 구역으로 보는 방식이므로 설정단위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
4번 X: 틀린 부분은 "지번(枝番)단위"라는 표현이다. 설정단위에 따른 분류는 지역단위·도엽단위·단지단위로 나뉘며, 지번의 가지번호는 본번에 딸린 부번 표현일 뿐 번호 부여의 공간적 설정단위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설정단위에 따른 분류는 번호를 어느 공간 범위에서 시작하느냐를 묻는 분류인데, 4번은 번호의 형태인 가지번호를 마치 설정단위처럼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기준이 지역·도엽·단지처럼 지번을 붙이는 공간 단위인지, 아니면 본번·부번처럼 번호의 표기 방식인지를 먼저 구분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설정단위는 지역·도엽·단지이고, 가지번호는 설정단위가 아니라 지번의 세부 번호이다.

NoteBase

문 5. 고려 원종 시대에 설치되어 토지문서와 별고 소속 노비 문서를 담당했던 기구는?

① 급전도감
② 방고감전별감
③ 찰리변위도감
④ 화자가집전민추고도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시대 토지 관련 임시 관청들의 기능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방고감전별감은 원종 14년(1273)에 설치되어 전지의 공안과 별고 소속 노비의 천적을 맡은 기관이다.
급전도감은 토지를 지급하여 녹봉을 대신하는 토지분급 사무를 맡은 기관이다.
찰리변위도감은 권세가가 불법 점탈한 전민을 조사하여 본래 주인에게 되돌리는 기관이다.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은 환관이 점유한 전민을 추고하는 성격의 기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급전도감은 토지문서와 노비문서를 관리한 기관이 아니라 토지분급 사무를 맡은 기관이다. 틀린 표현은 "토지문서와 별고 소속 노비 문서 담당"이다. 올바르게는 "토지 지급과 분급 사무 담당"이다.
② O. 방고감전별감은 원종 때 설치되어 전지의 공안, 곧 토지문서와 별고 소속 노비의 천적을 담당하였다.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찰리변위도감은 권세가가 점탈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여 원주인에게 환원하는 기능이 중심이었다. 틀린 표현은 "토지문서와 별고 소속 노비 문서 담당"이다. 올바르게는 "불법 점탈 전민의 조사와 환원 담당"이다.
④ X.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은 환관이 점유한 전민 문제를 추고하는 기관으로, 문서 보관 기관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토지문서와 별고 소속 노비 문서 담당"이다. 올바르게는 "화자가 점유한 전민의 추고 담당"이다.

오답 포인트

선지들이 모두 고려 후기의 토지·전민 관련 임시 관청이라 이름이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점이 함정이다. 특히 찰리변위도감과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은 모두 전민 문제를 다루지만, 둘 다 문서 관리가 아니라 점탈 전민의 조사·환원 쪽이라는 점에서 ②와 구별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관 이름만 외우지 말고 담당 업무의 핵심어를 먼저 붙여서 판단한다. 문항에 "공안·천적·문서"가 나오면 방고감전별감을, "분급"이 나오면 급전도감을, "점탈 전민 환원"이 나오면 찰리변위도감을, "환관 전민 추고"가 나오면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을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방고감전별감은 문서, 급전도감은 분급, 찰리변위도감은 환원,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은 환관 전민 추고이다.

NoteBase

문 6. 지목의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식지목은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된 지목을 말한다.

② 2차 산업형 지목으로는 공장용지, 창고용지, 수도용지, 하천 등이 일반적인 지목이다.

③ 지형지목은 지표면의 형태, 토지의 고저, 수륙의 분포상태 등 지형의 물리적인 특징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④ 토성지목에서 토성이라 함은 하식지, 빙하지, 해안지, 분지, 습곡지, 화산지 등으로 구분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목의 분류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로, 특히 지형지목과 토성지목의 판단 기준 차이를 묻는다.

핵심 개념

복식지목은 1필지의 토지를 둘 이상의 기준으로 함께 분류한 지목이다.
산업형 지목은 토지 용도를 산업 활동의 성격에 따라 묶은 분류이다.
지형지목은 지표면의 형태, 고저, 수륙 분포처럼 지형의 물리적 형상을 기준으로 한다.
토성지목은 지층, 암석, 토양의 종류처럼 토지 자체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복식지목은 한 필지를 하나의 기준만으로 보지 않고 둘 이상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개념이므로 옳다.
② O: 2차 산업형 지목은 제조업과 그 관련 시설 중심의 산업적 이용과 연결되는 지목군을 말하므로 공장용지, 창고용지, 수도용지, 하천 등을 예로 든 설명은 타당하다.
③ O: 지형지목은 지표면의 형태, 토지의 고저, 수륙의 분포상태 등 지형의 물리적 특징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토성이라 함은 하식지, 빙하지, 해안지, 분지, 습곡지, 화산지 등으로 구분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하식지, 빙하지, 해안지, 분지, 습곡지, 화산지 등은 지형의 형성과 형태에 따른 구분이므로 지형지목의 예시에 가깝다.
토성지목의 토성은 지층, 암석, 토양의 종류 등 토지의 성질을 뜻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토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토양이나 흙의 성질을 떠올리지 못하고 지형 분류 예시를 그대로 토성지목에 연결하면 틀리기 쉽다. 하식지, 빙하지, 화산지처럼 지형 형성과 관련된 단어가 보이면 먼저 지형지목을 의심하는 것이 맞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본다. 지표의 모양과 형성과정을 묻으면 지형지목이고, 흙·암석·지층 같은 토지의 성질을 묻으면 토성지목이다. 한 필지를 여러 기준으로 함께 분류하면 복식지목이다.

암기 포인트

지형지목은 모양과 형상, 토성지목은 흙과 암석의 성질이다.

문 7. 토지등록의 편성방법 중 물적편성주의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과세에 목적을 둔 세지적의 소산

② 분할할 경우 본번과 관련하여 편철

③ 토지행정상 지장이 많음

④ 네덜란드에서 사용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토지등록의 편성방법 중 물적편성주의와 인적편성주의의 구별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물적편성주의는 토지라는 물건을 기준으로 필지별로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식이다. 필지의 동일성, 위치, 분할·합병 관계를 파악하기 쉽다는 점이 핵심이다.
인적편성주의는 소유자 등 사람을 기준으로 토지를 묶어 편성하는 방식이다. 과세 중심의 세지적에서 발달하여 토지행정에는 불편이 크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과세에 목적을 둔 세지적의 소산'이다. 이는 사람별로 토지를 묶는 인적편성주의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과세에 목적을 둔 세지적의 소산은 인적편성주의이다'이다.
② O: 물적편성주의는 필지를 기준으로 편성하므로 토지가 분할되면 본번과의 관련 속에서 편철하여 토지의 연혁과 동일성을 파악하기 쉽다.
③ X: 틀린 부분은 '토지행정상 지장이 많음'이다. 토지행정상 지장이 많은 것은 인적편성주의이다. 올바르게는 '물적편성주의는 필지 단위 관리가 쉬워 토지행정에 유리하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네덜란드에서 사용'이다. 네덜란드는 인적편성주의의 사례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물적편성주의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네덜란드에서의 사용은 인적편성주의 사례에 가깝다'이다.

오답 포인트

과세, 네덜란드, 토지행정상 지장 같은 표현은 인적편성주의 쪽의 단서인데, 문제에서 물적편성주의를 묻는다는 점을 놓치면 선지가 뒤바뀐다. ②는 본번과 분할이라는 필지 중심 표현이 직접 들어 있어 물적편성주의의 특징을 정확히 잡아낸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람을 기준으로 묶는지, 필지를 기준으로 묶는지를 먼저 구분하면 된다. 과세 중심, 세지적의 소산, 토지행정상 불편은 인적편성주의이고, 본번·분할·필지 연혁 추적은 물적편성주의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물적편성주의는 필지 중심이고, 인적편성주의는 사람 중심이다.

NoteBase

문 8. 토지의 일반적인 경계의 개념 중 사실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적도와 임야도에 표시되고 등록된 경계가 법률상 권리로 인정되는 경계

② 인접된 토지소유자들이 지상에 표시된 경계를 상호 인정하는 지상경계

③ 원시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결정한 지상경계로서 진정한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계

④ 현 시점 토지소유자가 사실상의 점유권을 행사하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실경계, 도상경계, 현실경계, 점유경계의 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실경계는 원시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결정한 지상경계로서 진정한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계이다.
도상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도면상에 표현된 공부상 경계이다.
현실경계는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상경계이다.
점유경계는 현재 토지권리자가 사실상의 점유권을 행사하며 지배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경계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지적도와 임야도에 표시되고 등록된 경계'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사실경계가 아니라 도상경계 또는 공부상 경계이다. 사실경계는 원시적으로 형성된 진정한 소유권 범위의 경계로 본다.
2번 X: '인접된 토지소유자들이 지상에 표시된 경계를 상호 인정'하는 경계는 사실경계가 아니라 현실경계에 가깝다. 사실경계는 단순한 상호 인정 상태보다 더 근원적인 소유권 경계라는 점이 다르다.
3번 O: 사실경계는 원시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결정한 지상경계로서 진정한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계를 말하므로 옳다.
4번 X: '현 시점 토지소유자가 사실상의 점유권을 행사하며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경계는 사실경계가 아니라 점유경계이다. 사실경계는 현재의 점유 상태 자체보다 원래의 진정한 소유권 경계를 뜻한다.

오답 포인트

사실경계와 현실경계, 점유경계를 모두 '실제 땅 위의 경계'로만 묶어 외우면 틀리기 쉽다. 2번은 상호 인정이라는 점 때문에 현실경계이고, 4번은 현재 점유라는 점 때문에 점유경계이며, 1번은 공부 등록이라는 점 때문에 도상경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공부 등록, 상호 인정, 현재 점유, 원시적 결정 중 어떤 기준어가 들어 있는지 먼저 본다. 공부 등록이면 도상경계, 상호 인정이면 현실경계, 현재 점유이면 점유경계, 원시적 소유권 경계이면 사실경계로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사실은 원시적 소유권, 현실은 상호 인정, 점유는 현재 지배, 도상은 공부 등록이다.

NoteBase

문 9. 토지등록의 유형인 적극적 등록주의 및 소극적 등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적극적 등록주의는 사유재산의 양도증서와 거래증서의 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적극적 등록주의는 거래의 등록이 소유권의 증명에 관한 증거나 증빙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③ 소극적 등록주의는 거래증서의 등록은 정부가 수행하고 합법성에 대해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④ 소극적 등록주의에서 토지등록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며 등록 효력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고, 발달된 형태로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이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적극적 등록주의와 소극적 등록주의의 차이, 즉 등록의 공신력·국가보장 여부와 거래증서 등록의 성격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적극적 등록주의는 등록 자체에 권리의 공신력과 국가보장이 결합된 방식이다. 권리의 합법성 심사와 등록 효력 보장이 핵심이다.
소극적 등록주의는 거래사실이나 거래증서를 공시하는 방식이다. 등록은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기능에 머무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적극적 등록주의는 사유재산의 양도증서와 거래증서의 등록으로 구분한다'는 표현이다. 양도증서·거래증서 중심의 설명은 거래증서 등록 계열의 설명이고, 올바르게는 적극적 등록주의는 권리의 등록 효력을 국가가 보장하는 권원등록 중심의 제도이다.
2번: X. '거래의 등록이 소유권의 증명에 관한 증거나 증빙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은 소극적 등록주의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적극적 등록주의의 등록은 단순 증거를 넘어 권리 공시와 공신력을 강하게 가진다.
3번: O. 소극적 등록주의는 거래증서의 등록을 정부가 관리하지만, 등록 전에 권리관계의 합법성이나 실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법성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맞다.
4번: X. 틀린 부분은 '소극적 등록주의에서'이다. 토지등록의 강제성·의무성, 국가에 의한 등록 효력 보장, 토렌스시스템은 적극적 등록주의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이 설명의 주체는 소극적 등록주의가 아니라 적극적 등록주의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는 '증거 기능'과 '국가 보장'을 서로 뒤바꾸어 놓았다. 2번의 증거 기능은 소극적 등록주의이고, 4번의 토렌스시스템과 국가보장은 적극적 등록주의라는 점을 바꾸어 읽으면 바로 틀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국가가 등록 효력을 보장한다, 강제적·의무적이다, 토렌스시스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적극적 등록주의로 본다. 거래증서 등록, 단순한 증거 기능,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국가 보장 부재가 나오면 소극적 등록주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극적 등록주의는 거래증서 등록·증거 기능, 적극적 등록주의는 국가보장·토렌스시스템이다.

NoteBase

문 10. 신라시대 구장산술 방전장의 토지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전의 토지는 장(長)과 광(廣)을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

② 직전의 토지는 장(長)과 평(平)을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

③ 원전의 토지는 반원주(半圓周)와 반경(半徑)을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

④ 호전의 토지는 내주(內周)와 외주(外周)를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라시대 방전장에서 토지형태별로 부책에 적는 측정 항목을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규전은 장과 광을 재는 기본형 토지이다.
직전은 장과 평을 재는 토지이다.
원전은 반원주와 반경을 재는 토지이다.
호전과 환전은 곡선형 토지이지만 적는 항목이 다르며, 호전은 현장과 시활, 환전은 내주와 외주를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규전의 토지는 장(長)과 광(廣)을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하므로 옳다.

② O
직전의 토지는 장(長)과 평(平)을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하므로 옳다.

③ O
원전의 토지는 반원주(半圓周)와 반경(半徑)을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하므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호전의 토지는 내주와 외주를 측정"이라는 표현이다.
호전은 내주와 외주가 아니라 현장과 시활을 측정하여 기재한다.
내주와 외주를 측정하여 부책에 기재하는 것은 환전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호전과 환전의 측정 항목을 서로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둘 다 곡선형 토지와 관련된 용어라서 헷갈리기 쉽지만, 호전은 현장·시활, 환전은 내주·외주로 구분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방전장 문항은 토지명 자체보다 그 토지에 대응하는 측정 항목의 짝을 먼저 확인하면 빠르게 판단된다. 특히 호전과 환전처럼 비슷한 용어는 서로의 측정 항목이 뒤바뀌지 않았는지를 본다.

암기 포인트

규전 장·광, 직전 장·평, 원전 반원주·반경, 호전 현장·시활, 환전 내주·외주이다.

NoteBase

문 11. 지목의 설정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일필일목의 원칙

②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③ 용도경중의 원칙

④ 일시변경가변의 원칙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지목 설정의 기본 원칙 명칭과 각 원칙이 뜻하는 내용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일필일목의 원칙은 1필지에는 1개의 지목만 설정한다는 원칙이다.
사용목적추종의 원칙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맞추어 지목을 정한다는 원칙이다.
용도경중의 원칙은 한 필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될 때 더 주된 용도, 비중이 큰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을 정한다는 원칙이다.
일시변경불변의 원칙은 일시적인 이용 상태 변화만으로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일필일목의 원칙은 한 필지에 하나의 지목만 붙인다는 뜻이므로 맞는 선지이다.

② O
사용목적추종의 원칙은 토지의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지목을 정한다는 뜻이므로 맞는 선지이다.

③ O
용도경중의 원칙은 둘 이상의 용도가 경합하면 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는 뜻이므로 맞는 선지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가변'이다.
실제로는 일시변경가변의 원칙이 아니라 일시변경불변의 원칙이다.
토지의 이용 상태가 일시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실제 원칙의 핵심 단어인 '불변'을 '가변'으로 바꾸어 정반대 의미를 만든 선지이다. ②와 ③은 용어가 낯설 수 있지만 실제 원칙이고, 이 문제의 함정은 낯선 용어가 아니라 반대 개념으로 바꿔 놓은 명칭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목 설정 원칙 문제는 명칭의 핵심어를 먼저 분해해서 본다. 일필일목은 필지와 지목의 수 대응, 사용목적추종은 지목 결정 기준, 용도경중은 복수 용도 충돌 시 우선 용도, 일시변경불변은 일시적 변화 배제라고 정리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지목 원칙은 하나만 붙이고, 목적을 따르며, 복수 용도면 큰 용도를 따르고, 일시는 바꾸지 않는다.

NoteBase

문 12. 지적도에 등록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목

② 소유자

③ 소재

④ 경계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과 토지대장 등에 등록되는 사항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지적도는 필지의 위치와 형상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소유자 정보는 대장에 등록된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 필지의 표시 사항을 도면으로 나타낸 지적공부이다.
토지대장 등은 필지의 표시와 함께 소유자 정보를 등록하는 장부이다.

핵심 구분

현행 지적공부 체계에서 지적도에는 필지의 위치와 형상을 나타내는 사항이 등록된다. 반면 소유자와 같은 인적 사항은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이다.
즉 지적도는 도면 중심, 토지대장은 장부 중심으로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이다. 지목은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른 종류 표시이므로 지적도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② X이다. 소유자는 지적도 등록사항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소유자"이다. 올바르게는 소유자는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이고, 지적도에는 소재·지번·지목·경계가 등록된다.
③ O이다. 소재는 토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위치 표시이므로 지적도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④ O이다. 경계는 필지의 범위를 나타내는 본질적 표시 사항이므로 지적도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같은 지적공부라고만 기억하면 소유자도 지적도에 적힌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 문제의 함정은 "지적도"라는 도면 공적장부와 "토지대장"이라는 장부 공적장부의 기능 차이를 묻는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제가 지적도인지 토지대장인지 먼저 확인한 뒤, 도면이면 위치·형상 중심의 표시 사항인지, 대장이면 소유자까지 포함한 장부 사항인지를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적도는 소재·지번·지목·경계이고, 소유자는 대장 사항이다.

NoteBase

문 13.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16년에 시험조사부터 시행하여 1921년에 조선임야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② 조사대상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의 개재지(介在地)로 구성하였다.

③ 조사방법 및 절차는 토지조사와 유사하였으며 임야대장 등록지는 도지사의 사정지와 임야심사위원회의 재결지라 할 수 있다.

④ 1918년 제령 제5호로 조선임야조사령을 제정, 발포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임야조사사업의 시행 시기, 조사대상, 임야대장의 성격, 근거 제령을 함께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임야조사사업은 토지조사사업에서 빠진 임야와 그 안의 개재지를 대상으로 소유와 경계를 확정한 조사사업이다. 핵심은 토지조사사업의 보완적 성격과 연도 구분이다. 1916년은 시험조사 착수 시기이고, 1918년은 조선임야조사령 제정 시기이며, 1921년은 완료 시점으로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1921년에 조선임야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이다. 1916년에 시험조사가 시작된 것은 맞지만, 1921년 완료는 맞지 않는다. 적어도 1차 사정은 1924년까지 진행되었고, 권리조사까지 넓게 보면 사업은 그 이후까지 이어졌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1916년에 시험조사가 시작되었고, 1921년에 완료된 것은 아니다.
② O: 임야조사사업은 토지조사사업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을 이렇게 잡은 설명은 맞다.
③ O: 임야조사사업의 조사방법과 절차는 토지조사사업과 유사한 구조로 진행되었고, 사정과 불복 재결을 거쳐 확정된 사항이 임야대장에 등록되었다. 따라서 선지의 취지는 임야대장이 사정·재결의 결과를 반영한 등록장부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④ O: 조선임야조사령은 1918년 제령 제5호로 제정·발포되었다. 따라서 연도와 제령 번호를 연결한 설명은 맞다.

오답 포인트

1916년 시험조사, 1918년 제령 제정, 1920년대 사정 진행이 한 덩어리로 섞이면 1921년 완료처럼 오인하기 쉽다. 이 문항은 사업의 시작 연도와 완료 연도를 혼동하는지를 노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도형 선지는 시작, 법적 근거 제정, 완료를 분리해서 본다. 1916년은 시험조사, 1918년은 조선임야조사령, 완료는 1921년이 아니라는 점만 잡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임야조사사업은 1916 시험조사, 1918 조선임야조사령, 1921 완료 아님으로 정리한다.

NoteBase

문 14. <보기>는 지적불부합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에 적합한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일부 기준점의 위치변동에 의한 경계결정 착오로 일정한 방향으로 밀리거나 중복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필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
㉡ 삼각점 또는 도근점의 계열과 도선의 배열이 서로 다른 경우에 등록전환이나 이동측량 시의 측량오류와 국지적인 측량성과로 인한 오류로서 토지의 경계선이 벌어지는 현상
㉢ 일필지의 토지가 형상과 면적은 사실과 일치하나 등록된 경계위치와 현실경계 위치가 다른 경우로 필지경계선이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현상

① ㉠: 편위형, ㉡: 공백형, ㉢: 지형변동형
② ㉠: 편위형, ㉡: 위치오류형, ㉢: 지형변동형
③ ㉠: 위치오류형, ㉡: 공백형, ㉢: 불규칙형
④ ㉠: 불규칙형, ㉡: 공백형, ㉢: 위치오류형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불부합 유형을 결과 형태의 핵심 키워드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편위형은 여러 필지의 경계가 일정한 방향으로 통째로 밀려난 유형이다.
불규칙형은 일정한 방향성 없이 산발적으로 경계가 어긋나는 유형이다.
공백형은 인접 경계선 사이가 벌어져 빈틈이 생기는 유형이다.
위치오류형은 일필지의 형상과 면적은 사실과 맞지만 등록 경계 위치와 현실 경계 위치가 다른 유형이다.
지형변동형은 하천 이동이나 매립 등 실제 지형 변화로 경계 상태가 달라진 유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ㄴ의 '공백형'은 맞지만 ㄱ의 '편위형'과 ㄷ의 '지형변동형'이 틀리다. ㄱ은 '일정한 방향으로 밀리거나 중복되지 않고 산발적으로'라는 표현이므로 편위형이 아니라 불규칙형이다. ㄷ은 형상과 면적은 사실과 일치하고 경계 위치만 다르므로 지형변동형이 아니라 위치오류형이다. 올바르게는 'ㄱ 불규칙형, ㄴ 공백형, ㄷ 위치오류형'이다.

② X: ㄱ, ㄴ, ㄷ이 모두 틀리다. ㄱ은 한 방향으로 밀린 편위형이 아니라 방향성 없이 어긋난 불규칙형이다. ㄴ은 경계선이 벌어지는 현상이므로 위치오류형이 아니라 공백형이다. ㄷ은 실제 지형이 변한 것이 아니라 등록 경계와 현실 경계의 위치 차이이므로 지형변동형이 아니라 위치오류형이다. 올바르게는 'ㄱ 불규칙형, ㄴ 공백형, ㄷ 위치오류형'이다.

③ X: ㄴ의 '공백형'만 맞고 ㄱ과 ㄷ이 바뀌었다. ㄱ은 일필지 경계 위치만 잘못된 위치오류형이 아니라 산발적 불일치가 나타나는 불규칙형이다. ㄷ은 불규칙형이 아니라 형상과 면적은 맞고 위치만 다른 위치오류형이다. 올바르게는 'ㄱ 불규칙형, ㄴ 공백형, ㄷ 위치오류형'이다.

④ O: ㄱ은 일부 기준점 위치변동으로 경계가 일정한 방향 없이 산발적으로 어긋난 경우이므로 불규칙형이다. ㄴ은 서로 다른 기준점 계열과 측량오류로 경계선이 벌어지는 경우이므로 공백형이다. ㄷ은 형상과 면적은 맞지만 등록 경계 위치와 현실 경계 위치가 다른 경우이므로 위치오류형이다.

오답 포인트

지적불부합은 원인보다 결과 형태로 구별해야 한다. ㄱ은 '기준점 위치변동'이라는 원인만 보고 편위형으로 가기 쉽지만, 결정 단서는 '일정한 방향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문구이다. ㄷ도 '현실과 등록이 다르다'는 말만 보고 지형변동형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지형 변화가 아니라 위치만 다른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경계가 한 방향으로 통째로 밀렸는지, 벌어져 틈이 생겼는지, 형상과 면적은 같은데 위치만 다른지, 방향성 없이 산발적으로 어긋났는지를 본다. 한 방향 밀림은 편위형, 벌어짐은 공백형, 형상과 면적은 같고 위치만 다르면 위치오류형, 방향성 없는 산발적 불일치는 불규칙형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한 방향 밀림은 편위형, 벌어짐은 공백형, 모양은 같고 자리만 다르면 위치오류형, 방향성 없이 뒤섞이면 불규칙형이다.

NoteBase

문 15. 등기기록 양식의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는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② 저당권의 변경등기는 갑구에 기재되어 있다.

③ 지상권에 관계되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기는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④ 소유권에 관계되는 환매권의 등기는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등기기록 양식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기재된다는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부분이다.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는 부분이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 권리자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나 주소 등 표시만 고치는 등기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기재된다. 따라서 저당권·지상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을구에서 처리되고, 소유권의 말소나 소유권에 관계되는 환매권 등기는 갑구 계열에서 처리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갑구에 기재된다.
틀린 표현: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올바른 표현: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는 갑구에 기재되어 있다.

② X
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므로 그 변경등기도 을구에 기재된다.
틀린 표현: "갑구에 기재되어 있다"
올바른 표현: 저당권의 변경등기는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③ O
지상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므로 지상권에 관계되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을구에 기재된다.

④ X
환매권은 이 문항에서 소유권에 관계되는 등기로 묻고 있으므로 을구가 아니라 갑구에서 보아야 한다.
틀린 표현: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올바른 표현: 소유권에 관계되는 환매권의 등기는 갑구에 기재되어 있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권리의 내용이 아니라 등기의 종류만 보고 기재 구를 외웠을 가능성이 높다. 말소등기나 표시변경등기라는 형식보다 먼저 그 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것인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 권리가 소유권이면 갑구, 지상권·저당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이면 을구로 먼저 나눈 뒤, 말소·변경·표시변경 같은 등기 형태를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라는 1차 분류가 먼저이다.

NoteBase

문 16. 조선시대에 양전개정론을 주장한 사람과 양전개정방안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약용 - 경무법

② 이기 - 망척제

③ 서유구 - 수등이척제

④ 유길준 - 전통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시대 양전개정론에서 인물별 대표 방안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정약용: 경무법·어린도법·방량법을 통해 결부제의 폐단을 고치고 정확한 양전을 지향하였다.
이기: 망척제를 통해 수등이척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면적을 더 객관적으로 계산하려 하였다.
서유구: 결부제 폐지와 어린도 작성, 구거삼각법에 의한 양전수법십오제를 주장한 인물이다.
유길준: 경무법에 따른 양전, 전통도 작성, 지권 발행을 통해 근대적 지적 정비를 구상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약용은 결부제를 경무법으로 고치자고 본 대표 인물이다. 결부제가 토지의 실제 면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보다 객관적인 측량과 과세 기준을 강조하였다.
② O: 이기는 망척제를 주장한 인물이다. 수등이척법의 부정확성을 줄이고 토지 면적을 그물눈처럼 계산하려는 발상이므로 연결이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서유구 - 수등이척제'이다. 수등이척제의 개선과 연결되는 망척제는 이기의 논의이고, 서유구는 결부제 폐지, 어린도 작성, 구거삼각법에 의한 양전수법십오제 쪽과 연결된다.
④ O: 유길준은 양전 후 전통도를 작성하여 전국 지적도를 마련하고 지권을 발행하자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유길준과 전통제를 연결한 것은 맞다.

오답 포인트

서유구와 이기의 방안을 서로 바꾸어 놓으면 가장 많이 흔들린다. '수등이척제 보완 -> 망척제 -> 이기'의 연결이 잡혀 있지 않으면 ③을 맞는 선지처럼 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긴 문장을 통째로 외우기보다 인물명과 대표 키워드를 한 쌍으로 묶어 판단하면 된다. 정약용-경무법, 이기-망척제, 서유구-양전수법십오제, 유길준-전통도·지권제도로 정리하면 선지 교차배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정약용 경무, 이기 망척, 서유구 양전수법, 유길준 전통도이다.

NoteBase

문 17. 지적의 발생설이 아닌 것은?

① 과세설

② 치수설

③ 지배설

④ 환경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지적의 발생설에 해당하는 대표 이론과 해당하지 않는 용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과세설은 토지에 대한 조세 부과를 위해 토지의 위치·면적·소유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견해이다.
치수설은 홍수 방지나 관개 같은 치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토지 현황을 조사·기록하면서 지적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견해이다.
지배설은 국가권력이나 지배자가 영토와 주민을 통치·지배하기 위해 토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생겼다고 보는 견해이다.
환경설은 지적의 대표적 발생설로 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과세설은 지적 발생을 조세 징수 필요성과 연결하는 대표적 학설이므로 맞다.

② O
치수설은 하천 관리와 관개 등 치수 필요에서 토지 조사와 기록이 시작되었다고 보므로 맞다.

③ O
지배설은 국가나 지배자가 토지를 지배·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적이 발생하였다고 보므로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환경설"이다.
지적의 대표적 발생설에는 과세설·치수설·지배설 등이 있으며, 환경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지적의 발생설은 역사적 발생 원인을 묻는 분류인데,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섞이면 실제 학설처럼 보이기 쉽다. 이 문항은 ④의 "환경설"처럼 그럴듯하지만 통설적 발생설 목록에 없는 용어를 끼워 넣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적의 발생설 문제는 먼저 조세, 치수, 지배처럼 국가가 토지를 파악해야 하는 직접적 필요와 연결되는지 본다. 이 축에 들어가지 않는 낯선 용어는 오답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지적 발생설의 대표 묶음은 과세설·치수설·지배설이다.

NoteBase

문 18. 국제표준으로 공포된 토지행정도메인모델(LADM, ISO 19152)의 핵심 패키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사자(party)

② 지적 필지(cadastral parcel)

③ 공간 단위(spatial unit)

④ 측량 및 표현(surveying and representation)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LADM의 핵심 패키지명과 그 안의 개별 클래스·공간객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LADM은 토지행정 정보를 표준화한 개념모델로 당사자, 행정, 공간 단위를 핵심 패키지로 두고 공간 단위 쪽에는 측량 및 공간표현이 함께 연결된다.
당사자 패키지는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단체를 다루고, 공간 단위 패키지는 필지·건물·네트워크의 법적 공간단위를 다룬다.
지적 필지는 패키지명이 아니라 공간 단위 패키지 안에서 표현되는 개별 공간객체의 예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당사자(party)는 LADM의 핵심 패키지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이나 법인처럼 권리·의무 관계의 주체를 표현하는 영역이므로 패키지명으로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지적 필지"를 패키지처럼 제시한 표현이다. 지적 필지(cadastral parcel)는 패키지명이 아니라 공간 단위 패키지에서 다루는 공간단위의 예시이다. 올바르게는 "공간 단위(spatial unit)"가 패키지명이다.

③ O
공간 단위(spatial unit)는 LADM의 핵심 패키지이다. 필지, 건물의 법적 공간, 유틸리티 네트워크의 법적 공간 같은 대상을 담는 틀이라서 패키지명으로 맞다.

④ O
측량 및 표현(surveying and representation)은 LADM의 핵심 구조에 포함되는 구성이다. 정확히는 공간 단위 패키지와 연결된 측량·공간표현 영역으로 다루어지므로, 패키지가 아닌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오답 선지가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패키지명과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개별 클래스·객체 예시를 섞어 놓은 함정이다. ②의 "지적 필지"는 익숙한 용어라서 패키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간 단위 패키지에서 표현되는 대상 예시에 가깝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준 모델 문제에서 보기가 "패키지명"인지 "그 안의 세부 객체·예시"인지를 먼저 구분하면 된다. Party, Administrative, Spatial Unit처럼 상위 분류명은 패키지이고, cadastral parcel처럼 구체 대상명은 대개 패키지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LADM은 사람, 권리행정, 공간단위가 큰 틀이고 필지는 그 안의 대상이다.

NoteBase

문 19. 토지조사사업 당시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총회는 불복 또는 재심 신청 건수를 재결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② 토지소유권 확정에 관한 최고 심의기관이었다.

③ 최초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였다.

④ 사정에 불만이 있는 자는 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불복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위상, 구성, 그리고 사정 불복 절차의 기간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소유권 사정에 관한 불복과 재심을 심의·재결하던 상급 위원회이다.
이 문항은 기관의 성격과 역할, 최초 구성 인원, 불복 기간 같은 숫자 정보를 함께 묻고 있으므로 개념과 수치를 같이 기억해야 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22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총회라는 회의 형식을 곧바로 불복 또는 재심 신청 사건의 재결 목적과 동일시한 점이 틀렸다.
불복과 재심을 다루는 핵심 기능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심의·재결 권한에 속한다.
올바르게는 고등토지조사위원회가 토지소유권 사정에 대한 불복과 재심을 재결하였다고 정리하는 편이 맞다.

② O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토지소유권 사정에 관한 분쟁을 상급에서 심의·재결하던 기관이었다.
따라서 토지소유권 확정에 관한 최고 심의기관이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③ X
틀린 표현은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이다.
최초의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으로 구성되었다.
올바르게는 최초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으로 구성되었다고 고쳐야 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90일 이내"이다.
사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사정 공시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었다.
올바르게는 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기관의 위상과 내부 운영 표현을 섞어 놓고, 구성 인원과 기간 수치를 바꿔 넣은 점이다.
특히 ①은 총회라는 표현 때문에 그 회의체 자체가 불복 사건 전담기구였다고 오해하기 쉽고, ③과 ④는 6인, 90일처럼 숫자만 비틀어 암기 오류를 유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적사 문항에서 위원회가 나오면 먼저 그 기관이 무엇을 심의·재결하는지부터 잡고, 그다음 구성 인원과 불복 기간 같은 숫자 정보를 확인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기관의 성격이 맞더라도 인원이나 기간이 하나라도 다르면 바로 오답으로 처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소유권 사정 불복·재심의 상급 위원회이고, 최초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이며, 불복 기간은 60일이다.

NoteBase

문 20. 토지등록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속력: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사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② 공정력: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록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이다.

③ 확정력: 토지등록사항에 대하여 사법권의 힘을 빌릴 것이 없이 행정청 자체의 명의로써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④ 강제력: 유효하게 된 표시사항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소관청 자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행위를 다툴 수 없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토지등록에 준용되는 행정행위의 효력 구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공정력, 구속력, 강제력, 불가쟁력·불가변력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공정력 = 위법한 하자가 있어도 절대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다.
구속력 = 유효한 처분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관계 행정청이 구속되는 효력이다.
강제력 = 행정청이 사법상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처분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이다.
불가쟁력·불가변력 = 일정 시점이 지나면 상대방 등의 다툼이나 행정청 자신의 변경·취소가 제한되는 효력이다.

핵심 구분

공정력은 흠 있는 처분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게 취급하는 효력이고, 구속력은 유효한 처분의 내용에 당사자와 관계 행정청이 묶이는 효력이다.
강제력은 자력집행의 문제이고, 불가쟁력은 상대방 등의 다툼 제한, 불가변력은 행정청 자신의 변경 제한의 문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구속력은 유효한 행정행위의 내용이 상대방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사법청까지 당연히 구속하는 의미로 쓰지 않는다.
틀린 표현: "상대방과 사법청을 구속하는 효력"
올바른 표현: "상대방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② O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절대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다. 선지는 공정력의 일반적 설명과 일치한다.

③ X
사법권의 힘을 빌리지 않고 행정청이 스스로 자력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확정력이 아니라 강제력 또는 집행력의 설명이다.
틀린 표현: "확정력"
올바른 표현: "강제력 또는 집행력"이다.

④ X
일정 기간이 지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효력을 다투지 못하는 것은 불가쟁력에 가깝고, 소관청 자신이 함부로 처분을 번복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변력에 가깝다. 이를 강제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
틀린 표현: "강제력"
올바른 표현: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에 관한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효력의 이름만 외우고 내용을 섞으면 ③과 ④에서 쉽게 흔들린다. 자력집행이면 강제력, 취소 전까지 유효이면 공정력, 기간 경과 후 다툼 제한이면 불가쟁력·불가변력이라는 기준이 분리되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 문장을 읽고 먼저 효과의 방향을 확인하면 된다. 취소 전까지 유효인지, 처분 내용에 묶이는지, 행정청이 스스로 집행하는지, 시간 경과 후 다툼이 막히는지를 구분하면 효력 이름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공정력은 취소 전 유효, 구속력은 내용 구속, 강제력은 자력집행, 불가쟁력·불가변력은 시간 경과 후 다툼 제한이다.

NoteBase